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은 등급인정유효기간으로 갈음)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요양보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따른다. 다만 기타비용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협의 하에 수납한다.

① 급여비용은 급여유형별 건강보험공단의 해당년도 수가표를 따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은 15%, 경감 9%, 경감6%, 수급권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비급여항목은 방문요양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간보호서비스는 급식비, 간식비, 이·미용서비스비, 문화생활비, 특실이용료, 원거리 교통비 중 **급식비**와 **간식비**만을 비용 처리하여 수납한다. 비급여의 산정은 기관의 사정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사전에 고지하되 운영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비용은 익월 15일 이내에 급여명세서에 일계산하여 발송하여 계좌 입금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이용자는 표준약관 제3조(급여범위)에 따른 서비스 계약 이용 시 대리인(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표준약관 제5조(계약자의무)에 준하는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서비스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할 의무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고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의 의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계약의 해제】

계약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갑에게 통지할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10일 이상의 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5.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또는 이용자의 문제행동 등과 같이 다른 입소자나 시설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6.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재계약 시 신규계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1.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2.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